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준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711

발의연월일 : 2021. 1. 28.

발 의 자: 윤준병 · 김윤덕 · 민병덕

민형배 · 오영환 · 이용빈

이해식 · 정필모 · 진성준

허 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국내 자동차 등록 대수가 2,622만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 205만대를 넘어 미가입 비율이 7.8%에 달하고 있음.

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보장 여부가 불투명함에 따라 피해자에게 막대한 신체적·정신적·재산적 피해를 입힐 우려가 크며,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행정처분에 따른 막대한 업무량 폭주로 행정력 낭비와 사무처리의 비용 등 행정사무의 비효율화를 초래하고 있음.

이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 일정 기간이 경과한 경우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자동차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행정사무의 효율화를 기 하고자 함(안 제13조제3항제6호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7705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3조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」 제6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말소등록에 관한 적용례) 제13조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(말소등록) ①・② (생	제13조(말소등록) ①・② (현행과
략)	같음)
③ 시·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	③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	
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	
있다.	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6.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」
	제6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
④ ~ ① (생 략)	④ ~ ① (현행과 같음)